

과세 기간	~	<b>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</b>	상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**1.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**

① 복식 부기 의무 여부	② 차량 번호	③ 차종	④ 임차 여부	⑤ 보험 가입 여부	⑥ 총 주행 거리 (km)	⑦ 업무 용 사용 거리 (km)	⑧ 업 무 용 사 용 비 율 (⑦/ ⑥)	⑨ 보 험 의 무 가 입 대 상 일 수	⑩ 실 제 보 험 가 입 일 수	⑪ 보 험 가 입 일 수 비 율 (⑩/ ⑨)	⑫ 취 득 가 액 (취 득 일, 임 차 기 간)	⑬ 해 당 연 도 보 유 또 는 임 차 기 간 월 수	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					
													⑮ 감 가 상 각 비	⑰ 임 차 료  감 가 상 각 비 상 당 액	⑱ 유 류 비	⑲ 보 험 료	⑳ 수 선 비	㉑ 자 동 차 세
											(...)							
											(...)							
											(...)							
											(...)							
											(...)							
											(...)							
㉔ 합계																		

**2.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**

⑮ 차 량 번 호	⑯ 업무사용금액			⑰ 업무외사용금액			⑳ 감가상각비 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㉑ 필요경비 불산입 합계 (㉓+㉔)	㉒ 필요경비 산입 합계 (㉓-㉑)
	㉓ 감가상각비 (상당액) [(㉕ 또는 ㉖) × ㉗ × ㉘]	㉙ 관련 비용 [(㉚-㉕) 또는 ㉚-㉖) × ㉗ × ㉘]	㉚ 합계 (㉓+㉙)	㉕ 감가상각비 (상당액) (㉕-㉓) 또는 (㉖-㉓)	㉖ 관련 비용 [(㉚-㉕) 또는 ㉚-㉖) - ㉙]	㉗ 합계 (㉕+㉖)			
㉓ 합계									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③⑧ 차량번호	③⑨ 차종	④⑩ 취득일 (입차기간)	④① 전기이월액	④②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④③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누계	④④ 필요경비추인(산입)액	④⑤ 차기이월액(④③-④④)
④⑤ 합계							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

④⑦ 차량번호	④⑧ 양도가액	④⑨ 세무상 장부가액				⑤④ 처분손실 (④⑧-⑤③<0)	⑤⑤ 당기필요경비 산입액 (⑤④≤800만원)	⑤⑥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(⑤④-⑤⑤)
		⑤⑩ 취득가액	⑤① 감가상각비 누계액	⑤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(=④⑤)	⑤③ 합계 (⑤⑩-⑤①+⑤②)			
⑤⑦ 합계								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⑤⑧ 차량번호	⑤⑨ 차종	⑥⑩ 처분일	⑥① 전기이월액	⑥②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(=⑤⑥)	⑥③ 필요경비산입액 (800만원 한도)	⑥④ 차기이월액 (⑥①+⑥②-⑥③)
⑥⑤ 합계						

## 작성 방법

**1.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**

- 가. “① 복식부기의무여부”란: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, 해당되는 경우 "Y"로 표시합니다.
- 나. “② 차량번호”란: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.
- 다. “③ 차종”란: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.
- 라. “④ 임차여부”란: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(자가, 렌트, 리스)를 적습니다.
- 마. “⑤ 보험가입여부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(업무전용자동차보험)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.
- 바. “⑥ 총주행거리”란: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- 사. “⑦ 업무용 사용거리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근·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.
- 아. “⑧ 업무용사용비율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적으며,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.
- 1)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(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. 이하 같음)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
  - 2)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
- 자. “⑨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.
- 차. “⑩ 실제 보험가입일수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.
- 카. “⑬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”란: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(임차)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(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)을 적습니다.
- 타. “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”란: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
**2.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**

- 가. “⑮ 업무사용금액”란: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나. “⑯ 업무외사용금액”란: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“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”란: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(상당액)이 800만원(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)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**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명세**

- 가. “⑱ 전기이월액”란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- 나. “⑲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액 누계”란: “⑱ 전기이월액”란의 금액과 “⑳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”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“㉑ 필요경비추인(산입)액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(상당액)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(산입)합니다.

작성 방법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

- 가. “㉔ 감가상각비 누계액”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나. “㉕ 처분손실”란: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다. “㉖ 당기필요경비 산입액”란: “㉕ 처분손실”란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.
- 라. “㉗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”란: ㉕의 금액이 ㉖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.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- 가. “㉘ 전기이월액”란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”란을 적습니다.
- 나. “㉙ 필요경비 산입액”란: ㉘ 전기이월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